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 816호

이 조례(안)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
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통·반 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
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
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4조에
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12월 5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구청장이 임명·관리하던 통장의 위·해촉 등 통반장관리의 전 사무를
동장에게 위임하여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실성 있는
통반관리 업무의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통의 명칭과 구역의 지정을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개정(제3조)
- “통장추천심사위원회”를 “통장선정심사위원회”로 명칭개정 및
구청장 위촉에서 동장 위촉으로 개정(제5조의 제2항)
- 통·반장의 해촉을 구청장 또는 동장에서 동장으로 개정(제5조의 제4항)
- 통·반장의 신분증 발급을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개정(제5조의 제5항)

- “통장추천심사위원회 구성.운영”을 “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.운영”으로
제목 개정(제5조의2 제목)
- “통장추천심사위원회”를 “통장선정심사위원회”로 개정(제5조의2의 제1항)
- 통·반장의 교육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실시의 추진을
구청장에서 구청장 또는 동장으로 개정(제10조의 제2항)
- 통장 상해보험 가입을 구청장에서 구청장 또는 동장으로 개정
(제10조의 제3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자치행정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, 전화 : 3396-4553, FAX : 3396-8613, E-mail : lora1228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통·반의 명칭 및 구역) 통·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. 통·반을
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하고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
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
경우에는 동장이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구청장 또는 동장”을 “동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
“구청장은”을 “동장은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 제목 “통장추천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”을 “통장선정심사위원회
구성·운영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 제1항 중 “통장추천심사”를 “통장선정심사”로 하고, “통장추천심사위원회”를
“통장선정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구청장”을 각각 “구청장 또는 동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통·반의 명칭 및 구역) <u>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.</u> 통·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	제3조(통·반의 명칭 및 구역) <u>통·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.</u> ----- -----.
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 (생략)	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하고 <u>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.</u> 다만,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. 1. ~ 2. (생략)	② ----- <u>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.</u> ----- ----- 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구청장 또는 동장은</u>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략)	④ <u>동장은</u>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
⑤ <u>구청장은</u> 통·반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, 신분증의 규격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	⑤ <u>동장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의2(<u>통장추천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</u>) ① 동장은 <u>통장추천심사</u> 를 위하여	제5조의2(<u>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</u>) ① ----- <u>통장선정심사</u> -----

<u>통장추천심사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동 단위별 비상설 기구로 한다. ② ~ ⑤ (생략)	<u>통장선정심사위원회</u> _____ _____, _____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0조(편의제공) ① (생략)	제10조(편의제공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구청장</u>은 통·반장에게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② <u>구청장 또는 동장</u> _____ _____ _____ _____.
③ <u>구청장</u>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	③ <u>구청장 또는 동장</u> _____ _____ _____ _____.